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, 진주시, 사천시, 김해시, 밀양시, 의령군, 함안군, 창녕군,
고성군, 남해군, 하동군, 산청군, 함양군, 거창군, 합천군

내 용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0조, 제4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」 등에 따르면, 보장기관(시·군·구청장)은 보장시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급여의 전부를 중지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생계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, 이미 지급한 생계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명령을 하게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 창원시 등 15개 시·군 소재 85개 보장시설에서는 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○○○ 등 190명의 사망 월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사망일 이후 지급된 과잉지급 시설생계급여 13,719,663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2,696,972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진주시장은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1,290,529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사천시장은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572,941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김해시장은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71,959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밀양시장은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125,366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의령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587,519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함안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681,507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창녕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1,413,474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고성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857,111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461,314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하동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1,700,918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산청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546,227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함양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1,998,129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거창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593,071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합천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122,626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